

3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 상장폐지 요건 신설)
- 나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불공정거래 신고 소액포상금 지급한도 상향)
- 다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개별 주식 위클리옵션 도입)
- 라. 주식 ·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지수옵션 시장조성 의무종목 행사가격 범위 확대)
- 마. 금리 · 통화 ·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시장조성 의무이행 평가 및 대가 지급 관련 요건 설정)
- 바.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(특별운용 금액 월별 산정 근거 마련)

3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(2026/6/18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 요건 및 관련 신고의무를 신설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 요건 신설(제95조, 제123조의8)
 - 기초자산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3개월간 계속되는 경우 해당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을 상장폐지
 - 주권의 경우 직전 3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내 평균 시가총액 비중이 100분의 5 미만이거나,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1,000분의 25 미만
 -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직전 3개월간 평균 거래대금 비중이 해당 파생상품시장 내 1,000분의 3 미만 또는 1,000분의 5 미만(「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」제5-6조의2 제2항 각 호의 운용방법에 따라 투자대상으로 삼은 경우에 한정)
- 단일종목상장지수펀드증권 · 상장지수증권의 상장폐지 요건 해당 신고의무 신설(제96조, 제123조의9)
 - 기초자산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고 의무 부과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한국거래소 규정 및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하는 개정이유를 바탕으로 작성됨

나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(2026/6/26 개정 · 2026/6/2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불공정거래 신고 활성화와 신고 포상금 재원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- 불공정거래 신고 소액포상금 지급한도 상향(제6조의3 제2항)
 - 신고내용이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시장감시 업무의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액보상금 지급한도를 (기존) 600만원에서 (개정)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
-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가담자 포함(제6조의3 제4항)
 -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79조의2 제3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가담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
 - 다른 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
 -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하여 법 제429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을 받거나 법 제443조 또는 제445조 제22호의2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가 과징금부과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등을 한 경우
- 포상금 지급결정 시한 정비(제6조의3 제5항)
 - 타 기관에 동일한 신고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타 기관의 포상금 지급(여부)이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
- 포상금에 대한 예산통제기준 마련(제6조의3 제6항)
 - 포상금은 지급결정이 있는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,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

다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(2026/6/11 개정 · 2026/6/2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개별 주식 위클리옵션 도입(제13조의3, 제14조, 제15조, 제19조, 제164조, 별표 16)

- 주식옵션거래에 매주 목요일을 거래개시일로 하고 다음 목요일을 최종거래일로 하는 결제주종목을 상장
 - 행사가격 설정, 최종거래일, 이론가격 등 관련 조문을 정비

□ 단계별 가격제한폭 확대 관련 기준종목 설정방법 개선(제56조의2)

- 모든 종목의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상품에 대하여 단계별 가격제한폭 확대 여부 판단 시 최근월물을 기준종목으로 설정하도록 제도 개선
 - 기초주권 제외로 상장폐지 조치 또는 기업이벤트 등에 따른 조치 등으로 모든 결제월물의 최종거래일이 동일한 상품

□ 옵션의 실시간 가격제한폭 확대(별표 25)

- 기초자산 가격 급변시 투자자의 거래 제약을 완화하기 위하여 옵션의 실시간 가격제한폭 산출시 적용되는 변동성 변화율을 확대(30%→60%)하고 가격제한폭 최소값(0.03p)을 도입

라. 주식·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2026/6/23 개정·2026/6/29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상장 예정인 개별주식 위클리옵션에 대한 시장조성 근거와 의무평가·대가기준 등을 정하여 상장과 동시 유동성을 공급하고,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지수옵션 시장조성 의무종목의 행사 가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신규 개별주식 위클리옵션(주식옵션 결제주거래) 시장조성 도입(제5조, 제8조, 별표 2, 별표 4 제1호)

- 시장조성 의무종목에 주식옵션 결제주종목을 추가
- 기존 주식옵션 결제월거래와 상장 예정인 주식옵션 결제주거래를 개별 상품으로 구분하여 시장조성
 - 결제월거래 및 결제주거래 구분에 따른 시장조성계좌 신고체계 정비
 - 시장조성상품 배정 시 동일 기초자산의 주식선물 시장조성자에게 주식옵션 결제월거래 및 결제주거래를 각각 배정
- 주식옵션 결제주거래의 의무·대가기준 설정
 - 결제월거래 시장조성자에게 결제주거래를 추가 배정함에 따른 부담을 고려하여 일종의무이행률을 75%로 설정

- 결제주거채를 별도 시장조성상품으로 분류하여 대가기준 별도 적용

☐ 지수옵션 시장조성 의무종목 행사가격 범위 확대(제5조)

- 외가격 의무종목의 행사간격을 확대하여 보다 거래수요에 부합하는 유동성 공급

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(제4조)

- 시장조성상품 선정을 위한 유동성지표 산정 시 시장조성호가에 의한 거래는 거래대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
 -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제2항 후단 신설(2026.2.27. 개정)

☐ 시장조성 운영사항의 제도화(별표 4 제1호, 제2호)

- 시장조성대가 한도는 거래소 예산 범위 내임을 명시
- 시장상황에 따른 효율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주가지수선물 의무 기준을 비율로 정함

마. 금리 · 통화 · 일반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(2026/6/23 개정 · 2026/7/1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☐ 신규 시장조성상품인 3년 · 10년 국채선물(원월종목)에 대한 시장조성 근거와 의무 · 대가기준을 정하고, 벌점 산출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산출대상을 재정립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☐ 시장조성 의무종목 추가(별표 2)

- 신규 선정된 3년 · 10년 국채선물(원월종목)과 기존 계약에 근거한 3개월무위험지표금리선물을 금리상품 시장조성 의무종목에 명시

☐ 시장조성 의무이행 평가 및 대가 지급 관련 요건 설정(별표 4)

- 3년 · 10년 국채선물(원월종목)의 의무이행을 지표, 위험등급 산정기준, 연계상품 및 연계상품 자기매매수수료 납부액 한도 등을 기존 금리상품과 같이 정함
- 3년 · 10년 국채선물 시장조성대가 지급한도를 연간 2천만원으로 함

☐ 벌점 산출대상 합리화(별표 4)

- 거래소의 직권해지로 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 미갱신으로 시장조성자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한 벌점 산출기준을 합리화하고자 함

- 벌점부과 및 1천만원 이상의 회원제재금 조치 등에 의한 계약해지 시 향후 1년간 시장조성자 자격이 상실되며, 파산 등의 경우에도 사실상 시장조성활동 불가
- 계약기간의 마지막 1개월이 다음 연도 벌점 산출기간에 포함되는 바, 미갱신으로 이미 시장조성자가 아닌 자에게도 그 1개월에 대한 벌점이 산출·통보
- 벌점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조성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산출 시점 시장조성자가 아니더라도 기존과 같이 벌점 산출

□ 표준계약서 개정(별제 제2호 서식)

- 3년·10년 국채선물의 최근월물에 대한 시장조성호가 제출 금지 및 기타 자구 수정

바. 거래증거금 및 청산증거금 현금 운용지침 (2026/6/16 개정·2026/6/17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증거금 현금 특별운용 금액을 기존의 분기별 산정 방식 외에 월별 산정 방식을 추가하고, 특별운용한도 산정 시 최근 증거금 현금예탁 규모 등을 반영하도록 개선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□ 특별운용 금액 월별 산정 근거 마련(제7조 제1항)

- 시장 상황 및 증거금 현금의 운용현황을 고려하여 특별운용 금액을 월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

□ 특별운용 금액 한도 산식 개선(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)

- 최근 현금예탁액 규모를 충분히 반영하여 특별운용 금액 한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
 - (기존) Min(최근 6개월 최저 현금예탁액의 80%, 최근 6개월 일평균 현금예탁액의 70%)
 - (개정) Min(최근 3개월 최저 현금예탁액의 90%, 최근 3개월 일평균 현금예탁액의 70%)

□ 특별운용 금액 월별 산정 시 특별운용부서 등에 대한 특별운용 금액 통보 기한 신설(제9조)

- 관리부서는 매 분기(월별로 정하는 경우는 해당 월) 마지막 거래일(청산증거금의 경우 영업일)의 8거래일 전까지 특별운용 금액을 특별운용부서 및 CCP리스크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함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